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4. 15 선고 2021나2526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2022. 4. 1.

판 결 선 고 2022. 4. 15.

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. 4. 14. 선고 2020가소28844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675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

항소취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자신에게 이 사건 소에서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,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(대법원 1992. 6. 12.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),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, 2020. 8. 29. C은행에서 거래처 C계좌(계좌번호 1 생략)로 675,000원을 이체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피고 명의 C은행계좌(계좌번호 2 생략)로 착오 송금하였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675,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.

나.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따르면, 원고가 C은행계좌(계좌번호 2 생략)로 675,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, 위 계좌는 피고의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B(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) 명의의 계좌에 해당하므로,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675,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,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지현, 판사 오덕식, 판사 한정훈